

## 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**인지세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**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·방법

※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구분	내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기한 방법	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우체국,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## ■ 인지세 가산

※ '21.1.1부터 적용 ※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

구분	내용
법정납부 기한 후 3개월 이내	미납세액의 100%를 가산세로 부과
법정납부 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미납세액의 200%를 가산세로 부과
법정납부 기한 후 6개월 초과	미납세액의 300%를 가산세로 부과

## 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### 온라인 이용방법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 
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④ 구매 - 납부정보 입력

- 1 용도 : 인지세 납부
- 2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3 금액 : 150,000원
- 4 건수 : 1건
- 5 확인 및 결제

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 
로그인 후 구매



⑤ 출력

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
(재발행 불가)



### 오프라인 이용방법

1. 우체국 · 은행 방문 (방문 전 문의 요망)
2.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3. 전자수입인지 발급